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11. 28 선고 2024가단3246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4. 10. 31.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2. 23.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2. 24. 접수 제1892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에 대하여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는 B의 누나이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B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산하 구리세무서장은 2023. 2. 17. B에게 예상 총 고지세액이 235,208,710원으로 된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내 위 통지서가 같은 달 20.경 도달하였고, 구리세무서장은 2023. 3. 27. B에게 체납세액 253,726,97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다. B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B은 2023. 2. 2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0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1, 12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21. 12. 31.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바,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인 2021. 12. 31.경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법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한편 사해의사는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에 의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부족한 공동담보가 더욱 감소하게 되는 것을 의도할 필요는 없고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또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 시가 534,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시가 21,230,320원 상당의 자동차와 각 예금 잔액이 6,203,529원, 87,962원인 예금채권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C조합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400,000,000원, 피고에 대한 채무액 330,000,000원,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235,208,700원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채권자들 중 1인인 피고에게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에게 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있어 채무초과상태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피고가 B에 대하여 2020년경 80,000,000원을, 2022. 6. 10.경 160,000,000원을 각 대여하여 채권을 보유하던 중 2023. 2. 23.경 B에게 추가로 10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가 사업활동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신규자금의 유입과 기존채무의 이행기의 연장 내지 채권회수조치의 유예는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적 추진을 위하여 가지는 경제적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비록 채무자가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였다 하더라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설령 피고가 2023. 2. 22.경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98,000,000원을 B 내지 B의 배우자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위 새로운 대여금인 98,000,000원을 초과하는 400,000,000원인 이상 이는 기존채무의 이행 유예를 위한 담보제공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B도 위 계약 당시 스스로 채무초과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피고는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혜원

별지